

[별표 2]

## 업무협약서 예시문안

제목	<b>A와 B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</b>
전문	A와 B는 상호발전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.
총칙조항	<p>제 1 조 (목적) 본 양해각서는 양기관이 상호 발전 및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 (기본운영원칙) 양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.</p>
실체조항	<p>제 3 조 (협력분야) 양기관이 추진하는 협력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</li> <li>2.</li> <li>3.</li> </ol> <p>제 4 조 (인력 활용 및 교류) 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구요원 등의 활용 및 교류를 할 수 있으며 방법은 양기관의 규정에 따른다</p> <p>제 5 조 (학술정보 교류) 양기관은 학술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학술 및 기술정보의 공동 활용에 적극 노력한다.</p> <p>제 6 조 (자문) 양기관은 상호 간 업무상 자문에 성실히 응한다.</p> <p>제 7 조 (기타)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</p>
해석조항	제 8 조 (해석) 본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양해각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효력 및 해지조항	<p>제 9 조 (효력 및 유효기간) ① 본 협약은 양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</p> <p>② 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0 년으로 하며,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된다.</p> <p>③ 본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,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측에 00 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0 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</p>
개정조항	제 10 조 (개정) 본 협약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.
기타부칙	<p>제 11 조 (비밀유지) 양기관은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</p> <p>제 12 조 (비용부담) 업무협력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</p> <p>제 13 조 (운영) 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연락담당자를 둔다.</p>

A(체결기관)

(체결권자)  
(서명)

B(상대기관)

(체결권자)  
(서명)